

식품 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92. 12. 21) 내용

육가공 분야 발취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1972. 12. 30	대통령령제	6443호
1973. 6. 23	대통령령제	6741호
1974. 8. 14	대통령령제	7224호
1975. 4. 28	대통령령제	7612호
1975. 12. 31	대통령령제	7935호
1977. 3. 8	대통령령제	8480호
1981. 4. 2	대통령령제	10268호
1982. 10. 21	대통령령제	10934호
1984. 4. 13	대통령령제	11409호
1985. 6. 29	대통령령제	11717호

전문개정

1986. 11. 11	대통령령제	12000호
1987. 7. 13	대통령령제	12213호
1988. 6. 27	대통령령제	12472호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 규정)		
1989. 7. 11	대통령령제	12755호
1991. 3. 11	대통령령제	13325호
1991. 8. 24	대통령령제	13453호
1992. 12. 21	대통령령제	1378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과자류제조업:곡분·

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만두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나.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 아이스크림류제조업:아이스크림·빙과류·액상 또는 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라. 유가공품제조업:우유·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건조·발효·혼합·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등을 제조하는 영업

마. 식육제품제조·가공업: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시지·베이컨·알가공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바. 어육제품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

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

사. 절임식품류제조업:농산물 또는 수산물을소금·간장·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젓갈류·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아. 김치제조업:무우·배추·파등 채소류를 소금등에 절여서 김치를 제조하는 영업

자. 통조림 또는병조림제조업: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차. 건포류제조업: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카. 두부류제조업:두부·유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타. 식용유지제조업: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류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어유(간유)를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파. 면류제조업:건면·숙면·당면또는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턴트면

류를 제조하는 영업

하. 다류제조업: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녹차·생강차·커피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다류를 제조하는 영업 (개정91. 3. 11)

거. 청량음료제조업: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과채류음료·곡류음료·혼합음료·분말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류·액상다류·인삼제품·무지유고형분이 3퍼센트 이상인 음료 및 광천음료수를 제외한다)를제조하는영업(개정91. 3. 11)

너. 광천음료수제조업:지하 암반층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등을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개정91. 3. 11)

더. 인스턴트식품제조업: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러. 건강보조식품제조업: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정제 혼합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머. 특수영양식품제조업:유아·병약자·노약자·비만자 및 임산부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는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버. 조미식품제조업: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식초·소오스·케첩등의 조미식품(동·식물로 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저. 인삼제품제조. 가공업:인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인삼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가공하는 홍삼류를 제외한다, (개정 91. 3. 11)

처. 식육얼음제조업: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육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커. 식품가공업

(1) 임가공업: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염소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주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식품을 가공(떡류의 경우에는 가공한 업소안에서의 진열·판매를 포함한다)하여 주는 영업.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단순가공업: 농·임·수산물등 자연산물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러한 것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료 식품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나) 동일 건물안에서 식품소분업과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3) 원료식품가공업: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서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그 원료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더. 기타 식품·가공업: 기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숙성·건조·염장하는 영업등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91. 11)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법 제28조제 1항의 규정 의하여 7조에 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제3호의 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87. 7. 13, 89. 7. 11, 91. 3. 11)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통조림·병조림을 제조하는 영

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유가공품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 또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92. 12. 20)

2.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절임식품제조업중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영업, 식용유지제조업중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압착식용유지제조업,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및 제13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경우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같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①법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87. 7. 13.

91. 3. 11.'92. 12. 20)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92. 12. 20)

1.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축산가공학또는약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2.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자.

3.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영양학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

4. 기타 업종의 경우 제5조 제 1항 제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자. ③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식품공업·수산가

공·식품냉동 또는 통조림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가공기능사·농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기능사·수산제조기능사·농화학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1. 3. 11' 92. 12. 20)

제1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 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 및 위생교육
6.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별표)

「개정89. 7. 11, 92. 12」

과징금 산정기준

(제38조)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 을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

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다.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3월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등 급	연간매출액 (단위:100만원)			1일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외의 영업정지	식품 및 첨가물제조 가공업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액 (단위:원)
1	50이하	100이하	100이하	30,000
2	50초과~100이하	100초과~200이하	100초과~200이하	50,000
3	100초과~150이하	200초과~310이하	200초과~300이하	70,000
4	150초과~210이하	310초과~430이하	300초과~400이하	90,000
5	210초과~270이하	430초과~560이하	400초과 ~500이하	110,000
6	270초과~330이하	560초과~700이하	500초과~650이하	130,000
7	330초과~400이하	700초과~860이하	650초과~ 800이하	150,000
8	400초과~470이하	860초과~1,040이하	800초과~950이하	170,000
9	470초과~550이하	1,040초과~1,240이하	950초과~1,100이하	190,000
10	550초과~650이하	1,240초과~1,460이하	1,100초과~1,300이하	205,000
11	650초과~750이하	1,460초과~1,710이하	1,300초과~1,500이하	220,000
12	750초과~850이하	1,710초과~2,000이하	1,500초과~1,700이하	235,000
13	850초과~1,000이하	2,000초과~2,300이하	1,700초과~2,300이하	265,000
14	1,000초과~1,200이하	2,300초과~2,600이하	2,000초과~2,700이하	280,000
15	1,200초과~1,500이하	2,600초과~3,000이하	2,300초과~2,700이하	280,000
16	1,500초과~2,000이하	3,000초과~3,400이하	2,700초과~3,100이하	295,000
17	2,000초과~2,500이하	3,400초과~3,800이하	3,100초과~3,600이하	310,000
18	2,500초과~3,000이하	3,800초과~4,300이하	3,600초과~4,100이하	325,000
19	3,000초과~4,000이하	4,300초과~4,800이하	4,100초과~4,700이하	240,000
20	4,000초과~5,000이하	4,800초과~5,400이하	4,700초과~5,300이하	355,000
21	5,000초과~6,500이하	5,400초과~6,000이하	5,300초과~6,000이하	370,000
22	6,500초과~8,000이하	6,000초과~6,700이하	6,000초과~6,700이하	385,000
23	8,000초과~10,000이하	6,700초과~7,500이하	6,700초과~7,400이하	400,000
24	10,000초과	7,500초과~8,600이하	7,400초과~8,200이하	415,000
25		8,600초과~10,000이하	8,200초과~9,000이하	430,000
26		10,000초과~12,000이하	9,000초과~10,000이하	445,000
27		12,000초과~15,000이하	10,000초과~11,000이하	460,000
28		15,000초과~20,000이하	11,000초과~12,000이하	475,000
29		20,000초과~25,000이하	12,000초과~13,000이하	490,000
30		25,000초과~30,000이하	13,000초과~15,000이하	505,000
31		30,000초과~35,000이하	15,000초과~17,000이하	520,000
32		35,000초과~40,000이하	17,000초과~20,000이하	535,000
33		40,000초과	20,000초과	55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p> <p>①법 제20조제 1항의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p>1.—2. (생략.)</p> <p>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p> <p>4.—5. (생략)</p> <p>②(생략)</p> <p>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의 세부종류와 그범위는 다음과 같</p> <p>제 14조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 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어목의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 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한다.</p> <p>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 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p>	<p>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p> <p>①</p> <p>.....</p> <p>.....</p> <p>.....</p> <p>.....</p> <p>.....</p> <p>1.—2. (현행과동일)</p> <p>3.</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공학·식품과학</p> <p>.....</p> <p>.....</p> <p>.....</p> <p>.....</p> <p>.....</p> <p>4.—5.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영업의 종류)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p> <p>제14조(조건부 영업허가의 대상)</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3호</p> <p>.....</p> <p>.....</p>

현행	개정안
<p>및 동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p> <p>1.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p> <p>2. (생략)</p>	<p>1.</p> <p>식육제품제조업·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p> <p>2. (현행과동일.)</p>
<p>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법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1종 식품위생관리인과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p> <p>1. 1종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행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축산가공학 또는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인삼제품 제조·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영양사·품질관리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2. 2종 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식품공업·수산가공·식품냉동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 하고 졸업한 자이거나식품가공기능사·농산식품가공기능사·</p>	<p>제16조(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자격)</p> <p>①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 식품위생관리인과 2종 식품위생 관리인으로 구분한다.</p> <p>②1종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격우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 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p> <p>1.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축산가공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자</p> <p>2.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자. 다만, 상시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 또는 축산 가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졸업한자</p> <p>3.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영양학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p> <p>4. 기타 업종의 경우 제5조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자</p> <p>③(현행제 2호와 같음)</p>

현 행

축산식품기능사·수산제조기능사·농화학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영업자의 범위) 법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7조 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 2. 제7조제 8호의 식품조리·판매업 (신설)
- 3. 제7조 제3호의 식품운반법, 제5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6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1. 제7조제7호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 제7조제 7호나목의 유흥접객업으로서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다만, 음식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memo

제17조의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1. 제7조제 5호의

(삭제)

2. 제7조제 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3. 제4호.....
..... 제6호..... 제7호.....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①집단급식소(제조업의 경우 상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한한다)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영업

2. 제7조제 8호의 식품접객업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군지역은 99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다만, 휴게음식점과 음식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